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 ③위원은 충청북도의 보건환경국장,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청주지방검찰청경제담당검사, 충북지방경찰청수사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제2항중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을 “위원장이 지명한”으로 하고 제9조중 “부지사”를 공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